

#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, 타 시·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·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를 삭제함(안 제7조 및 별표)
- 나.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, 조례 시행 전에 검사·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함(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,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,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,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 - (2) 입법예고(2019. 11. 7. ~ 11. 27..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

가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

나.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

별표를 삭제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검사·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연구원에 검사·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</u> : <u>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	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<u>시험·검사 등: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<u>시험·검사 등: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3. (생략)            ② ~ ④ (생략)  <u>[별표] 검사·시험 수수료 [제7조</u>  <u>제1항제1호 관련]</u>  <u>(표생략)</u></p>	<p><u>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</u>  <u>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</u>  <u>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</u>  <u>하는 수수료</u>            2.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'해당없음'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검사·시험 수수료 부과·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를 준용하여 규정 및 적용하므로 비용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행정6급 허안숙(02-570-3315)